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5 | 2026. 8. 18. (2026. 8. 10. ~ 2026. 8. 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필수항공운송노선’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 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하는 한편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과방위>, <보건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6
-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1차)」발표(관계부처 합동)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8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1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 등 10인) 1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0인) 15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1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1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의원 등 13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1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19

- 점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9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20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4인) 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 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2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형사]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예고
- [환경] 화학사고, '즉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 신고 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시사점
- [국방획득/방위산업] CMMC 최신 소식 2026년 7월
- [방송통신(TMT)] 4개 정예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美 Epoch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모두 등재
-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29. - 2026. 8. 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 -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2026-08-13
---------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6~'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임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형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함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함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함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음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現 26.3조원→ 47.8조원+α)하여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함.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하여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프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하여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함.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함.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함.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함

관계부처 합동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1차)」발표

- 기업의 혁신·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조기 이행 지원
- 새로운 경제·산업환경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 마련·발표(3분기) 추진

2026-08-13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하였음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음.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먼저,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26.下)

현재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시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 또한,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예: 트리니티 팹)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 신설, '27~'31년)하여 약 8,000억원의 투자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오창과학산단 내 제조시설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과 연결한 청주시 소유의 녹지 용도변경(녹지→산업용지)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26.下)하여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입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신속히 변경('26.下)해, 약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

②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첨단·신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 근로자와 같이 작업할 필요가 있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7.上)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27년)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적용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건축법」 등 개정, ~'27년). 반도체 팹(Fab)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단축(기존 7일 → 개선 3일)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규제를 합리화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예: 現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필요 → 改 과반수 동의).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고밀·복합개발 활용을 지원할 계획. 또한,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기회발전특구 지침」 개정 추진, '27.上)하는 등 입지규제를 유연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2026-08-11 시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11-12 시행 예정
-----	------------------------------	------------------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7-02-12 시행 예정
-----------	---------------------------------	------------------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7-02-12 시행 예정
-----------	--------------------------------	------------------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8-11 시행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며,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절차,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2027-02-12 시행 예정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08.11. ~2026.09.21.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82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운영,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전화: 051-773-6315, 팩스: 051-773-6339\)](tel:051-773-6315)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08.12. ~2026.09.21.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 ②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안 제22조)
- ③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044-202-7476, 팩스: 044-202-8056\)](tel:044-202-747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08.10. ~2026.09.21.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 (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2, 팩스: 044-201-7394\)](tel:044-201-7382)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8.11.
~2026.09.21.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4.22.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영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

-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②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의 처리 (영 제9조의3제6항)

-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 사용하도록 함

③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의 보고 (영 제9조의3제7항)

-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④ 광역교통계정 관리대상 사업 (부칙)

- 광역교통계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서 '27.1.1일 이후 착공 사업으로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49, 팩스: 044-868-8375\)](tel:044-201-5049)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8.13.
~2026.09.22.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팩스: 044-201-5574\)](mailto:044-201-377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026-08-14 발의
---------	----------------------------------	---------------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의 안전 확보나 철거·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노후 상가건물의 정비와 효율적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영업손실, 권리금 및 이전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건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정비하고,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철거·재건축을 위한 해지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계약해지 및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의 정비 및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6-08-11 발의
-------	---------------------------	---------------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들은 많은 보험설계사들을 자체 소속하에 두고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이면서 기업적인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인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

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6-08-11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8-11 발의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81조 등)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2026-08-13 발의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2026-08-13 발의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나목)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026-08-14 발의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2026-08-14 발의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우선, 현행법령은 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행위는 특정 주주와 결탁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특별관계로 해석되어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에 주식등의 추가 취득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으며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등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원의 선임·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기금 등이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행사하는 주주권 행사 역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8-14 발의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2026-08-12 발의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026-08-14 발의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1항 등)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2026-08-12 발의

현행법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 및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8-10 발의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의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2026-08-10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8-13 발의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농지 처분제도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처분명령의 유예 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려우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울러 처분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처분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재적발 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2026-08-10 발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08-14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의원 등 15인)**

2026-08-10 발의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2인)

2026-08-12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2026-08-11 발의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2026-08-12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최근 항공사들이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 운항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은 기본권인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등 배분 시 우대함으로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선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08-13 발의

도심 내 재정비·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방식으로 사업성 보장을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1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2026-08-13 발의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둌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08-14 발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2026-08-14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8/19(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등
과방위	전체회의	8/19(수) 10:00	- 간사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등
국방위	전체회의	8/20(목)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등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8/19(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등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8/19(수) 14:00	- 2025회계연도 결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8/19(수) 10:00	- 2025회계연도 결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한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8(화) 10:00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 관리법」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복기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8(화) 15:00	(여심포럼) AI시대 진단과 대책	윤용근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8/19(수) 09:30	전력안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모색	박선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9(수) 14:00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김주영·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8/19(수) 14:00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정책	문금주·서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8/20(목) 10:00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태호·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20(목) 14:00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언론산업 AI전환 전략	최형두·조은희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8/21(금) 14:00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8/19(수)	「Data&Law」제2026-9호(통권 제47호)	국회도서관	
	8/19(수)	「금주의 서평」제2026-32호(통권 제791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10(월)	「최신외국정책정보」제2026-10호(통권 제34호)	국회도서관	
	8/12(수)	「금주의 서평」제2026-31호(통권 제790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10(월)	형사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예고
8/10(월)	환경	화학사고, '즉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 신고 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시사점
8/11(화)	국방획득/방위산업	CMMC 최신 소식 2026년 7월
8/13(목)	방송통신(TMT)	4개 정예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美 Epoch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모두 등재
8/14(금)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8/14(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29. - 2026. 8. 11.)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